

의안번호	2205233
의 퇴 인	김남희 의원
회 답 일	2025. 1. 9.
추계번호	24C48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① 및 출산크레딧^②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확대하며 지원 시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20세 및 30세인 자^③, 육아휴직급여 수급자^④ 등에게 보험료 지원을 실시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1조 3,962억원(연평균 2조 2,792억원)으로 추계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⑤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93년까지 69년간 3,086조원(2025년 기준 불변가격)이 될 것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1):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	2,548	7,353	7,565	17,466	3,493
②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099	15,391	16,897	18,977	21,215	79,579	15,916
③ 20세 및 30세 보험료지원 (안 제100조의5)	390	414	469	539	548	2,360	472
④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안 제100조의6)	2,216	2,522	2,867	3,257	3,696	14,557	2,911
추가재정소요 소계	9,705	18,327	22,781	30,126	33,024	113,962	22,7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 2025~2093년

구 분	2025~2093년 누적 추가재정소요
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안 제51조)	3,086조원(2025년 기준 불변가격)

주: 1.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

2. 2093년은 현재 전망모형 상 전망기간의 마지막 시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연도와 적립금 소진연도는 각각 5년 연기되는 반면, 2093년 기준 누적적자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695.0조원 증가¹⁾할 전망
 - 다만, 본 추계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늘어날 경우의 급여 증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

[표 3]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

구 분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	적립금 소진연도	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
현 행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 소득대체율: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40%까지 매년 0.5%p씩 하향 조정 중(2024년 42%)	2041년	2057년	-
개정안	• 보험료율: 2037년 13%에 도달하기까지 2025년부터 매년 0.3%p씩 상향 조정 • 소득대체율: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2025년 50% 적용 후 유지	2046년 (+5년)	2062년 (+5년)	+695.0조원 (2025년 불변가격)

주: 1.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
 2. 2093년은 현재 전망모형 상 전망기간의 마지막 시점
 3.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²⁾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함	의무규정

1)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현행 제도 상 누적적자보다 증가한다는 의미
 2) 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2025년부터 매년 0.3%p씩 13%까지 인상)하는 경우 국민연금재정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증가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 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대체복무요원 미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규정
3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자녀를 얻은 날에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24개월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무제한) ※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규정
4	안 제51조(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에 적용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	의무규정
5	안 제100조의4(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실직 등에 따라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제기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의무규정
6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항~제3항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 중 아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국가는 해당 기간동안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함 1.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의무규정
7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4항	국가는 안 제100조의5 제2항에 따라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 중 3개월 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의무규정
8	안 제100조의6(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금 제외)을 부담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 일부 조항에 대한 추계가 곤란하여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시기와 그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2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3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4	안 제51조(기본연금액)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5	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항~제3항	○	○ 2021~2023년의 공적연금 가입자 수 추이 및 2021년 7월~2025년 6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계
7	안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4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100조의6(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 2021~2023년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5제4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100조의4)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수와 이들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정보, 대상자가 최대 36개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³⁾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특정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수를 알 수 없음
 - * 참고로, 현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인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재산은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 후에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
 - 또한, 개정안은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및 신규 지역가입자 각 개인의 향후 소득 변동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인별 평균 지원 기간 및 최대 36개월 지원 달성 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
- (안 제100조의5제4항) 국가가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20세 및 30세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 내용과 횟수 등을 알 수 않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홍보와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 (2024년 예산 16억 2,200만원)하고 있으나, 20세 및 30세 등 청년을 위한 별도의 홍보사업은 없음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8조·제19조·제51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만 추계하되, 추계기간은 조항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설정하여 각각의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 중에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자(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대상으로 함

- (안 제51조) 소득대체율의 변경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본 추계서는 개정안 시행시점인 2025년부터 현행 재정전망 모형의 마지막 시점인 2093년까지의 누적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 특정 해의 소득대체율은 그 해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미래에 연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적용
 - 예를 들어, 2024년의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2024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연금수급 시점에서 연금액을 산출할 때 이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2024년 30세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35년 후인 65세 도달 시점에 연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소득대체율 42%가 반영됨
 - 이에 소득대체율의 변화가 제도화되어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 2025년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인 반면,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이므로, 2025년에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급여가 인상되는 사람들은 2025년 중 1개월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해에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하거나, 2025년 중 1개월 이상 의무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해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사람 등으로 수급자의 극히 일부에만 개정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이들에 대해서도 전체 가입기간 중 2025년에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에 대해서만 인상된 소득대체율 적용되므로 급여 인상분이 크지 않음
 - 본인의 전체 가입 중 2025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급여 증액 효과가 크므로 후세대로 갈수록 재정지출 증가분이 더 커지게 됨
 - 따라서 단기간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정보는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2025년부터 2093년까지 69년간의 누적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계산하며,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2024.9.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잠정전망치)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
 - 다만,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른 가입기간 연장 효과와 안 제51조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종합하여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만 제시
 - 소득대체율 변동 없이도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입기간이 확대되어 급여가 증가될 수 있고, 여기에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급여가 더욱 증가하게 됨

- 그러나, 현재 구축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모형상 일부 가입자들의 가입기간 확대와 급여 증가 효과를 복합 적용하여 계산하기 곤란하므로, 가입기간 확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가입기간 확대 효과가 반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안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 9%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발생할 수입 증가액은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⁴⁾, 법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른 국민연금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시점 등에 관한 정보를 부대의견에 [참고자료]로 제시

- 다만, 본 추계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늘어날 경우의 급여 증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9개월 의무복무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⁵⁾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현역병⁶⁾,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군 복무자와 복무기간 도중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중도 귀가자)를 모두 포함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6)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병역 입대자 비율) 2010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1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31.9만명⁷⁾)의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4만명) 대비 비율(80.8%)을 산출하여 적용
- (직역연금 가입률) 2021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직역연금 가입자 수(2.9만명) 비율(7.3%)을 적용하여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⁸⁾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1	18	20	21	21	18.9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⁹⁾에서 도출된 A값의 50%에 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

7) 병무청 제출자료

8)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9)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표 5]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국민연금 A값 추정치(천원, A)	3,182	3,348	3,479	3,621	3,769
보험료율 안(% , B)	9.3	9.6	9.9	10.2	10.5
보험료 지원 단가(천원, $A \times 50\% \times B$)	148	161	172	185	198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제도 변경에 따른 총재정소요이며 2027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동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7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8.9개월 지원 기간 중 6.9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입대 이후부터 지원 둘째 해까지의 기간 중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6]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입대 연도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지원시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5	214,737	214,737 (6.9개월)	214,737 (12개월)				
2026	202,539		202,539 (6.9개월)	202,539 (12개월)			
2027	201,484			201,484 (6.9개월)	201,484 (12개월)		
2028	186,609				186,609 (6.9개월)	186,609 (12개월)	
2029	182,138					182,138 (6.9개월)	182,138 (12개월)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조 7,466억원(연평균 3,493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군복무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	2,548	7,353	7,565	17,466	3,4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¹⁰⁾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3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8.0%)을 차감하여 활용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출산 순위별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동일하므로 출산 순위를 고려하지 않음

[표 8]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0세 인구	217,226	217,079	227,833	237,996	247,279
출산자 중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199,848	199,713	209,606	218,956	227,49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 통계)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¹¹⁾에서 도출된 A값의 50%에 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

10)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11)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표 9]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국민연금 A값 추정치(천원, A)	3,182	3,348	3,479	3,621	3,769
보험료율 안(% , B)	9.3	9.6	9.9	10.2	10.5
보험료 지원 단가(천원, A×B)	296	321	344	369	396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첫째부터 자녀당 24개월)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7조 9,579억원(연평균 1조 5,916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099	15,391	16,897	18,977	21,215	79,579	15,9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51조)

-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표 11]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전망모형의 주요 변수

구 분		변수 개요
인구변수		·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2023년~2093년 추계결과(중위 가정)를 적용
거시경제변수	임금상승률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93년 명목임금상승률 잠정전망치
	물가상승률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9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잠정전망치
	회사채금리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93년 AA-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잠정전망치
	경제활동참가율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93년 연도별·성별·연령구간별 잠정전망치
제도변수		· 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등 외생변수는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할 때 사용한 전망치 준용 · 그 외 제도변수는 과거 실적 추세와 각종 모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변수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93년까지 69년간 3,086조원(2025년 기준 불변가격)이 될 것으로 추계됨

[표 12]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결과

구 분	소득대체율
현 행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40%에 도달(2028년)하기까지 매년 0.5%p씩 하향 조정 중(2024년 현재 42.0%)
개정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5년 50%로 인상한 후 유지
2025~2093년 누적 추가재정소요	3,086조원(2025년 기준 불변가격)

주: 1.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

2. 2093년은 현재 전망모형 상 전망기간의 마지막 시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20세 및 30세 연금보험료 지원(안 제100조의5)

- 개정안에 따라 해당 연령 도달 시점까지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한 이력이 없는 20세 또는 30세인 자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2021년부터 2023년의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와 이들의 인구 대비 비율 평균값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추이를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공적연금¹²⁾ 가입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

□ (대상자 수) 2021년부터 2023년의 20세 및 30세에 해당하는 인구와 개정안이 명시한 지원 제외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각 연령 인구 대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대상자 수를 산출

[표 13] 2021~2023년 인구 및 개정안에 명시된 지원 제외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세			30세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인구(A) ¹⁾	581,562	510,158	501,899	704,354	748,197	746,339
(B) 공적연금 가입자 수	128,673	119,616	110,102	611,724	644,946	638,942
국민	124,538	115,841	108,107	554,914	585,767	580,055
공무원	692	652	736	39,959	41,606	41,153
사학	38	14	16	9,607	9,953	9,987
군인	3,405	3,109	1,243	7,196	7,580	7,696
별정우체국	0	0	0	48	40	51
(C)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수(a-b) ²⁾	31,480	28,354	38,560	86,164	80,969	77,104
국민연금 가입이력자 수(a)	32,443	29,159	39,315	119,063	116,889	113,580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한 가입 상실자 수(b)	963	805	755	32,899	35,920	36,476
보험료 지원 대상자 수 (D=A-(B+C))	421,409	362,188	353,237	6,466	22,282	30,293
인구 대비 대상자 수 비율(D/A)	72.5	71.0	70.4	0.92	3.0	4.1
(2021~2023년 평균) ⁴⁾	(71.3)			(2.7)		

주: 1)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

2)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닌 사람을 대리변수로 하여 산출하되,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상실된 사람은 현재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은 제외

3) 2021~2023년 평균은 산술평균을 사용하였고, 대상자 수 추계시 소숫점 첫째자리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인구총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12) 본 추계서에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가리킴

- (지원 단가) 2021년 7월~2024년 6월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추계기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변동된다고 가정한 후, 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지원 단가를 산출
- 현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2021년 7월~2024년 6월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산출된 추계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역시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특정연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의 기간마다 변경되므로, 이러한 기간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추계하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 매년 연간 1/2분기와 2/2분기 기준소득월액 추계치의 평균값을 적용

[표 1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추이

(단위: 원, %)					
적용기간	2021.7. ~2022.6.	2022.7. ~2023.6.	2023.7. ~2024.6.	2024.7. ~2025.6.	연평균 증가율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30,000	350,000	370,000	390,000	5.7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360억원 (연평균 472억원)으로 추계됨

[표 15] 20세 및 30세 보험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원 대상자 수(명, A)	합 계	348,291	339,685	352,664	372,143	347,231	—	—
	20세	328,807	320,152	333,673	353,517	329,485	—	—
	30세	19,484	19,533	18,991	18,626	17,746	—	—
월 지원 단가(원, B) (평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보험료율 안)		37,293	40,656	44,303	48,297	52,605	—	—
지원 개월 수(개월, C)		3	3	3	3	3	—	—
추가재정소요 (억원, A×B×C)		390	414	469	539	548	2,360	4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안 제100조의6)

-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와 평균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 추계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 2021~2023년의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 추이와 평균 통상임금액이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

[표 16] 2021~2023년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

(단위: 개월,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해당연도 총 지원 개월 수	1,193,637	1,432,416	1,346,124	6.2
평균 통상임금액	2.70	2.81	2.91	3.8

주: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추계결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기간의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조 4,557억원(연평균 2,911억원)으로 추계됨

[표 1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연간 총 지원 개월 수(개월, A)	1,518,091	1,612,146	1,712,027	1,818,097	1,930,738	—	—
평균 통상임금액(백만원, B)	3.14	3.26	3.38	3.51	3.65	—	—
보험료율(% , C)	9.30	9.60	9.90	10.20	10.50	—	—
추가재정소요 (억원, $A \times B \times C \times 50\%$)	2,216	2,522	2,867	3,257	3,696	14,557	2,9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연도와적립금 소진연도는 각각 5년 연기되는 반면, 2093년 기준 누적적자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695.0조원 증가할 전망
 - 이 때,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참고자료]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

구 분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	적립금 소진연도	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
현 행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 소득대체율: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40%까지 매년 0.5%p씩 하향 조정 중(2024년 42%)	2041년	2057년	—
개정안	• 보험료율: 2037년 13%에 도달하기까지 2025년부터 매년 0.3%p씩 상향 조정 • 소득대체율: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2025년 50% 적용 후 유지	2046년 (+5년)	2062년 (+5년)	+695.0조원 (2025년 불변가격)

주: 1.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
 2. 2093년은 현재 전망모형 상 전망기간의 마지막 시점
 3. 안 제18조·제19조·제100조의5·제100조의6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